2021 개정세법 보충자료

□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세법 57)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 5년 → 10년

◎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 '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인상(조특법 29의7)

◎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60세 이상자 추가

① 15세 이상 29세이하 청년

② 장애인

③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신설)

★ '21.1.1. 이후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2020년 고용감소시 추징유예 한시적 특례(조특법 29의7)

◎ 2018 또는 2019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2020년 고용인원이 감소하는 경우, 고용감소에 따른 사후관리를 2020년은 적용하지 않음

◎ 2021년에 2018 또는 2019년 고용 수준 유지 시 세액공제 혜택 지속 적용

◎ 2021년에 2018 또는 2019년 대비 고용인원 감소시 세액공제액 추징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 인상(법법 55의2)

자산의 구분	세 율	
	2020.12.31.까지 양도분	2021.1.1.이후 양도분
1) 주택 및 별장	10%(미등기 40%)	20%(미등기 40%)
2) 비사업용 토지	10%(미등기 40%)	10%(미등기 40%)
3) 조합입주권 및 분양권	과세제외	20%(미등기 40%)

◎ 법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 2 신설

[별지 제3호 서식] (2021. 3. 16. 개정) (앞쪽)

사업연도	2021.1.1. ~ 2021.12.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⑩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01			54	000	000
	소득조정금액	⑫ 익금산입	02			36	000	000
		⑬ 손금산입	03			28	000	000
	⑭ 차가감소득금액 (⑩+⑫−⑬)		04			62	000	000
	⑮ 기부금한도초과액		05					
	⑯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⑰ 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⑭+⑮−⑯)		06			62	000	000
② 과세표준 계산	⑱ 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⑱=⑰)					62	000	000
	⑲ 이월결손금		07					
	⑩ 비과세소득		08					
	⑪ 소득공제		09					
	⑫ 과세표준 (⑱−⑲−⑩−⑪)		10			62	000	000
	⑬ 선박표준이익		55					
③ 산출세액	⑭ 과세표준(⑫+⑬)		56			62	000	000
	⑭ 세율		11				10	%
	⑮ 산출세액		12			6	200	000
	⑯ 지점유보소득 (「법인세법」 제96조)		13					
	⑬ 감면분추가납부세액		29			1	400	000
	⑬ 차감납부할세액 (⑮−⑫+⑬)		30			1	290	000
⑤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차익	⑬ 등기자산	31			22	000	000
		⑬ 미등기자산	32					
	⑬ 비과세소득		33					
	⑬ 과세표준 (⑬+⑬−⑬)		34			22	000	000
	⑬ 세율		35					20
	⑭ 산출세액		36			4	400	000
	⑭ 감면세액		37					
	⑭ 차감세액 (⑭−⑭)		38					
	⑭ 공제세액		39					
	⑭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58					
	⑮ 가산세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40					
	⑮ 가감계(⑭−⑭+⑭+⑮)		41					
	기납부세액	⑭ 수시부과세액	42					
		⑭ ( ) 세액	43					
		⑭ 계 (⑭+⑭)	44					
	⑮ 차감납부할세액(⑭−⑭)		45			4	400	000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2] (2021. 3. 16. 신설) (앞쪽)

사업연도	. . . ~ .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일련번호	② 구분	③ 등기여부	④ 소재지	⑤ 종류	⑥ 면적	취득일자 ⑦ 취득가액	양도일자 ⑧ 양도가액	⑨ 장부가액	⑩ 양도차익 (⑧−⑨)	비과세 ⑪ 유형	비과세 ⑫ 금액	⑬ 과세소득 (⑩−⑫)	⑭ 세율
1	건물	여	서울	주택	143.9	2018.5.16. 370,000,000	2021.6.12. 380,000,000	358,000,000	22,000,000			22,000,000	20%

2022 개정세법 중 2021 소급적용분

□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0·24)

◎국가전략기술 :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별표7의 2)(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R&D 비용에 대한 공제율

R&D 비용	대	중견	중소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국가전략기술	6%	8%	16%	4%

★'21.7.1.~24.12.31.까지 R&D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7)

◎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00만원 2021년~2022년 한시 상향

구 분		중소		중견		대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장애인등	종전	1,100	1,200	800		400	
	개정	1,100	1,300	800	900	400	500

◎ 적용기한 연장 : 2024.12.31.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에 대하여 적용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법령 97의4)

◎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임신고서 제출 -> 제도 폐지

★'2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자까지만 선임신고제도 적용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령 96의3)

◎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종 전	개 정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① 소상공인 ② 20.1.31.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③ 사행성 업종·과세유흥장소 등(별표14)을 경영하지 않은 자 ④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⑤ 사업자등록을 한 자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① 소상공인 ② 21.6.30.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신 설)	2. 임대차 계약 종료 전 다음의 요건을 갖춘 폐업자 ① 폐업하기 전에 1. 에 해당했을 것 ②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 적용기한 연장 : 2020.1.1.~2022.12.31.

★ '21.1.1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조특법 8의4)

◎ 소급공제 결손금 범위 확대

①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으로 확대

② 결손금 소금공제 순서 :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에서 먼저 공제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

예제)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

- 2021년 결손금 4억
- 2019년 및 2020년 법인세 신고내역

구 분	2019	2020
과세표준	150,000,000	300,000,000
세율	10%	20%
산출세액	15,000,000	40,000,000
공제감면	4,000,000	10,000,000
차감세액	11,000,000	30,000,000

[별지 제2호의4서식] <개정 2022. 3. 00.>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내국법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청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 태 · 종 목	
소 재 지			

2. 환급신청 명세

①결손사업연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 월 31일	② 직전전사업연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 월 31일
		③ 직전사업연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 월 31일
④결손사업연도 결손금액	⑤결손금액	4억	
	⑥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⑦+⑧)	3.1억	⑦직전전사업연도 : 1.1억
			⑧직전사업연도 : 2억

구 분		직전전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합 계
법인세액계산	⑨과세표준	150,000,000	300,000,000	
	⑩세 율	10%	20%	
	⑪산출세액	15,000,000	40,000,000	
	⑫공제감면세액	4,000,000	10,000,000	
	⑬차감세액(⑪-⑫)	11,000,000	30,000,000	
환급신청세액계산	⑭법인세액(=⑪)	15,000,000	40,000,000	
	⑮차감할 세액[{⑨-(⑦,⑧)}×세율] [⑮≧(⑪-⑬)]	4,000,000	10,000,000	
	⑯환급신청세액(⑭-⑮)(⑯≦⑬)	11,000,000	30,000,000	41,000,000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⑰예 입 처	은행 (본)지점
	⑱예금종류	
	⑲계 좌 번 호	예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 인) (인)

신청인(대표자) (서명)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앞쪽)

과 세 연 도	. . . ~ . . .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법 인 명	
			사업자등록 번호	

1. 인건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① 연구과제명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지급액	연구전담 등 구분
합 계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③ 연구 과제명	④ 재료비 등				
	계	견본품 등 (별표 6 1.가.2))	임차료 등 (별표 6 1.가.3))	위탁·공동연구비 (별표 6 1.나)	기타 (별표 6 1.다~사)
합 계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⑤ 연구 과제명	⑥ 연구개발비				⑦ 금액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착수일	연구종료일		
합 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부표(3)]

과 세 연 도	. . . ~ . . .	연구과제 총괄표	법 인 명	
			사업자등록 번호	

① 연번	② 기술 구분코드	③ 연구과제명	④ 기술명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한해 작성)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연구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작성한 연구과제는 ①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또는 ②새로운 서비스, 서비스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① 연번"란에는 1부터 시작하는 숫자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2. "② 기술구분 코드"란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숫자를 적습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 종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코드번호	01	02	03

3. "③ 연구과제명"란은 기업에서 구분하여 관리하는 연구과제별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과제의 구분은 기업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해당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만 해당), 투입 인력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④ 기술명"란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명을 적습니다.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동 란을 빈칸으로 남겨둡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가산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

□ 납부지연 가산세율 인하(국기령 27의4)

◎ 납부지연가산세율의 인하
25/100,000(연 9.15%) → 22/100,000(연 8.03%)

★ 적용시기

기 간	가산세율
~ 2019.2.11	3/10,000
2019.2.12. ~ 2022.2.14	25/100,000
2022.2.15. ~	22/100,000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소득법 81의2, 법인법 75)

◎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의 신설

· 계산식 MAX [①, ②]

① 산출세액×5%

② 수입금액×0.02%

★ 적용시기

2022.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2022.1.1. 이후에 납부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소득법 81의14, 법인법 74의2)

◎ 대상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를 미제출·불성실 제출

◎ 가산세액

-미제출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 × 1%

-불성실제출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1%

★ 적용시기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3. 16.> (앞쪽)

사 업 연 도	. . . ~ . . .	가 산 세 액 계 산 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무기장		산출세액		20/100	27	
		수입금액		7/10,000	28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29	
		수입금액		7(3.5)/10,000	30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31	
		무신고납부세액		60(30)/100	80	'15.1.1.개시
		수입금액		14(7)/10,000	32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과소신고납부세액		60/100	81	'15.1.1.개시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23	
~~부정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40/100~~	~~71~~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2/10,000	4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	8	
지급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10(5)/1,000	9	
	불분명	불분명금액		1/100	10	
	상증법 §82①⑥	미(누락)제출금액		2(1)/1,000	61	
		불분명금액		2/1,000	62	
	상증법 §82③④	미(누락)제출금액		2(1)/10,000	67	
		불분명금액		2/10,000	68	
	법인세법 §75의7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		25 (12.5)/10,000	96	
		불분명등		25/10,000	97	
	소계				11	
주식등 변동 상황 명세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2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3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1/100	14	
	소 계				15	
주주등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2.5)/1,000	69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소 계				74	
계산서	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2/100	16	
	계산서 지연발급 등	공급가액		1/100	94	
	계산서가공(위장)수수	공급가액		2/100	70	
	계산서 불분명	공급가액		1/100	17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공급가액		5(3)/1,000	93	
	지연전송	공급가액		3(1)/1,000	92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18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19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75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76	
소 계					20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발급금액		5/100	24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대상금액		2/1,000	25	
	소 계				2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	38	
		건 수		5,000원	39	
		소 계			40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미가맹일수 수입금액	( )	10(5)/1,000	41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금액		20(10)/100	98	
세금우대자료 미제출·불분명		건 수		2,000 (1,000)	77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미제출금액		5(2.5)/1,000	78	
	불분명	불분명금액		5/1,000	79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63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 금액	( )		64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산출세액		5/100	95	
		수입금액		2/10,000	9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미제출금액		1/100	100	
	불성실	불성실금액		1/100	101	
합 계					2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 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42	
수입금액		7(3.5)/10,000	43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44	
수입금액		14(7)/10,000	45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47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48	
공제감면세액		40/100	72	
(일수) 미납세액	( )	2.2/10,000	51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		65	
합 계			5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① 구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83	
		수입금액		7(3.5)/10,000	84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85	
		수입금액		14(7)/10,000	86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87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88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89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2/10,000	90	
합 계					91	

법정납부기한
(. .)

납부일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핵심 체크사항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2021.5.31)

◎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중소기업인 질의법인은 보유 중이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21년 상반기에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고 '21.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예정임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을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

◎ 회신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해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①항은 '20.2.11. 개정시 '§=9의2호'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 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를 대손사유로 추가하며 그 시행시기를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 해당 사유는 법적 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사유가 발생(2년 이상 경과)하여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법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데, 개정조항의 시행전에 이미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20.1.1. 이후에 손비로 계상하였다면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음(서면-2021-법령해석법인-2501, 2020.10.26)
-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것이므로 '20.1.1. 전에 이미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20.1.1. 이후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라도 부가법상 대손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20.1.1. 이후에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예규임.

□ 2020 고용감소 추징유예 후 2021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법인세과-1570, 2021.08.13)

◎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본인은 법인사업자이며, 2019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아왔으며 2020년 근로자가 감소하였음.
-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세액공제액이 추징되지 않고 유예를 적용받았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근로자가 다시 증가한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갑설)2021년 증가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에, 직전 근로자 수는 2020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산
(을설)2021년 증가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에, 2020년은 추징이 제외되었으므로 직전 근로자 수는 2019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산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2021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2020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해설
2020년 고용감소로 인해 추징세액이 유예되었더라도 20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시 증가한 근로자 수는 직전연도인 2020년과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임.

□ 감면 공제의 중복적용

◎ 적용가능 예시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가사회보험료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배제

(1) 모든 투자에 대한 공제배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130 ②).

(2) 증설투자에 대한 공제배제

1) 공제배제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130 ①).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

②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

2) 증설투자의 범위

증설투자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조특령 124 ①).

구 분	내 용
①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②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3) 적용제외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 안에 소재하는다음의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 규정을 배제하지 않는다(조특령 124 ②).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3) 적용제외대상 자산

다음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1)과 (2)의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조특법 130 ① ②, 조특령 124 ③, 조특칙 54)

①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

②「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

③ 제21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④ 에너지 절약시설(조특칙 별표 7)

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지 위한 시설(조특칙 별표 7의 2)

⑥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조특칙 별표 11)

고용증대 세액공제

예제1) 고용증대세액공제
2018년 창업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인원 현황이다.

구 분	합 계	청 년	청년외
2018	30	20	10
2019	40	25	15
2020	27	18	9
2021	29	19	10

[2018]
(1) 1차연도 세액공제
20명 × 1,100만원 + 10명 × 700만원 = 290,000,000원

[2019]
(1) 1차연도 세액공제
5명 × 1,100만원 + 5명 × 700만원 = 90,000,000원

(2) 2차연도 세액공제
290,000,000원

[2020]
고용감소하였으나 특례규정에 따라 추징유예

[2021]
(1) 1차연도 세액공제
1명 × 1,100만원 + 1명 × 700만원 = 18,000,000원

(2) 2차연도 세액공제 - 없음

(3) 2차연도 세액 추징
min[(25명−19명), 5명(2019년 공제받은 인원수 한도)]× 1,100만원 + (15명−10명) × 700만원 = 90,000,000원

(4) 3차연도 세액공제 - 없음

(5) 3차연도 세액 추징
1명 × 1,100만원 × 2회 = 22,000,000원

예제2) 고용증대세액공제
2018년 창업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인원 현황이다.

구 분	합 계	청 년	청년외
2018	30	20	10
2019	40	25	15
2020	27	18	9
2021	38	26	12

[2018]
(1) 1차연도 세액공제
20명 × 1,100만원 + 10명 × 700만원 = 290,000,000원

[2019]
(1) 1차연도 세액공제
5명 × 1,100만원 + 5명 × 700만원 = 90,000,000원

(2) 2차연도 세액공제
290,000,000원

[2020]
고용감소하였으나 특례규정에 따라 추징유예

[2021]
(1) 1차연도 세액공제
8명 × 1,100만원 + 3명 × 700만원 = 109,000,000원

(2) 2차연도 세액공제 – 없음

(3) 2차연도 세액 추징
Min[(15명−12명), 2명(상시근로자 감소인원수 한도) × 700만원 = 14,000,000원

(4) 3차연도 세액공제
290,000,000원

예제3) 고용증대세액공제
2018년 창업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인원 현황이다.

구 분	합 계	청 년	청년외
2018	30	20	10
2019	40	25	15
2020	27	18	9
2021	43	31	12

[2018]
(1) 1차연도 세액공제
20명 × 1,100만원 + 10명 × 700만원 = 290,000,000원

[2019]
(1) 1차연도 세액공제
5명 × 1,100만원 + 5명 × 700만원 = 90,000,000원

(2) 2차연도 세액공제
290,000,000원

[2020]
고용감소하였으나 특례규정에 따라 추징유예

[2021]
(1) 1차연도 세액공제
13명 × 1,100만원 + 3명 × 700만원 = 164,000,000원

(2) 2차연도 세액공제
90,000,000원

(3) 3차연도 세액공제
290,000,000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서식] <개정안 2022. 0. 00.>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택스에듀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❷ 과세연도	2021 년 1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⑧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⑦)
43	27	16

2.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⑩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⑪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⑩)
31	18	13

3.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⑬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⑭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⑬)
12	9	3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법인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	1인당 공제금액	⑮ 1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13	1천1백만원	143,000,000
		청년 등 외	3	7백만원	21,000,000
	수도권 밖	청년 등		1천3백만원	
		청년 등 외		7백7십만원	
	계				164,000,000
중견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8백만원	
		청년 등 외		4백5십만원	
	수도권 밖	청년 등		9백만원	
		청년 등 외		4백5십만원	
	계				
일반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4백만원	
		청년 등 외			
	수도권 밖	청년 등		5백만원	
		청년 등 외			
	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⑱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⑯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⑰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⑯-⑰)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⑲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⑳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㉑ 2차년도 세액 공제액
부	부			
	여			
여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㉔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㉒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㉓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㉔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㉒-㉓)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㉕ 1차년도(전전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㉖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㉗ 3차년도 세액 공제액
부	부			
	여			
여				

라.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 등이 감소하여 2차년도 또는 3차년도에 대한 세액공제가 유예된 경우 세제지원 요건 : ㉚ ≥ 0

1.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㉘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㉙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2021년)	㉚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
2018.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30	43	13
2019.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40	43	3

2. 유예세액 계산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최초 공제받은 과세년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㉛ 해당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㉜ 해당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㉝ 세액 공제액 (유예 적용분)
2018.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220,000,000	70,000,000	290,000,000
	여			
2019.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55,000,000	35,000,000	90,000,000
	여			

❹ 세액공제액: 1차년도 세액공제액⑮ + 2차년도 세액공제액㉑ + 3차년도 세액공제액㉗ + 유예적용분 세액공제액㉝	544,000,000

예제3) 고용증대세액공제
2018년 창업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인원 현황이다.

구 분	합 계	청 년	청년외
2018	30	20	10
2019	40	25	15
2020	27	18	9
2021	43	22	21

[2018]
(1) 1차연도 세액공제
20명 × 1,100만원 + 10명 × 700만원 = 290,000,000원

[2019]
(1) 1차연도 세액공제
5명 × 1,100만원 + 5명 × 700만원 = 90,000,000원

(2) 2차연도 세액공제
290,000,000원

[2020]
고용감소하였으나 특례규정에 따라 추징유예

[2021]
(1) 1차연도 세액공제
4명 × 1,100만원 + 12명 × 700만원 = 128,000,000원

(2) 2차연도 세액공제
35,000,000원

(3) 2차연도 세액 추징
(25명−22명) × (1,100만원−700만원) = 12,000,000원

(4) 3차연도 세액공제
290,000,000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서식] <개정안 2022. 0. 00.>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택스에듀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❷ 과세연도	2021 년 1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⑧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⑦)
43	27	16

2.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⑩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⑪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⑩)
22	18	4

3.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⑬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⑭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⑬)
21	9	12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법인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	1인당 공제금액	⑮ 1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4	1천1백만원	44,000,000
		청년 등 외	12	7백만원	84,000,000
	수도권 밖	청년 등		1천3백만원	
		청년 등 외		7백7십만원	
	계				128,000,000
중견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8백만원	
		청년 등 외		4백5십만원	
	수도권 밖	청년 등		9백만원	
		청년 등 외		4백5십만원	
	계				
일반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4백만원	
		청년 등 외			
	수도권 밖	청년 등		5백만원	
		청년 등 외			
	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⑱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⑯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⑰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⑯-⑰)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⑲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⑳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㉑ 2차년도 세액 공제액
부	부			
	여			
여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㉔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㉒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㉓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㉔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㉒-㉓)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㉕ 1차년도(전전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㉖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㉗ 3차년도 세액 공제액
부	부			
	여			
여				

라.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 등이 감소하여 2차년도 또는 3차년도에 대한 세액공제가 유예된 경우 세제지원 요건 : ㉚ ≥ 0

2.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㉘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㉙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2021년)	㉚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
2018.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30	43	13
2019.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40	43	3

2. 유예세액 계산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최초 공제받은 과세년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㉛ 해당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㉜ 해당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㉝ 세액 공제액 (유예 적용분)
2018.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	220,000,000	70,000,000	290,000,000
	여			
2019.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			
	여		35,000,000	35,000,000

❹ 세액공제액: 1차년도 세액공제액⑮ + 2차년도 세액공제액㉑ + 3차년도 세액공제액㉗ + 유예적용분 세액공제액㉝	453,000,000

[별지 제8호 서식(을)] (2018. 3. 21. 개정)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2021.1.1. ~ 2021.12.3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 인 명	㈜택스에듀
			사업자등록번호	

5. 추가납부세액

⑫ 구 분		⑬ 근거법 조항	코드	⑭ 대상금액	⑮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⑱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1		
	⑱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2		
	⑱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제5조·제11조·제24조·제25조·제25조의 2·제26조·제94조·제96조		773		
	⑱ 기 타		775	12,000,000	12,000,000
	⑱ 소 계		780	12,000,000	12,000,000
법인세법 등	⑱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6항	781		
	⑱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782		
	⑱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97조 제3항	783		
	⑱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60조 제8항	786		
	⑲ 혼성금융상품 관련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상당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3 제3항	787		
	⑲ 기 타		785		
	⑲ 소 계		784		
⑮ 추가납부세액 합계(⑱ + ⑲)			790	12,000,000	12,000,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6] (개정 2013. 2. 23.)

(앞쪽)

사 업 연 도	2021. 1. 1. ~ 2021. 12. 31.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택스에듀
			사업자등록번호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⑲ 구분	⑳ 공제감면 받은 연도	㉑ 추가납부 사유	㉒ 공제감면 세액	가 산 액			㉖법 인 세 추가납부액 (㉒+㉕)
				㉓이율 (일변)	㉔기간	㉕금액 (㉒×㉓×㉔)	
1	2019년	청년근로자 감소	12,000,000	-	-	-	12,000,000
계			12,000,000				12,000,000
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 ㉗(⑨+⑱+㉖)				12,000,000			

[별지 제3호 서식] (2020. 3. 13. 개정) (앞쪽)

사 업 연 도	2021.1.1. ~ 2021.12.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택스에듀
			사업자등록번호	

①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⑩①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01	6 500 000 000
	소득조정금액	⑩② 익금산입	02	1 000 000 000
		⑩③ 손금산입	03	500 000 000
	⑩④ 차가감소득금액 (⑩①+⑩②-⑩③)		04	7 000 000 000
	⑩⑤ 기부금한도초과액		05	
	⑩⑥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⑩⑦ 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⑩④+⑩⑤-⑩⑥)		06	7 000 000 000
② 과세표준 계산	⑩⑧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⑩⑧=⑩⑦)			7 000 000 000
	⑩⑨ 이월결손금		07	
	⑪⓪ 비과세소득		08	
	⑪① 소득공제		09	
	⑪② 과세표준 (⑩⑧-⑩⑨-⑪⓪-⑪①)		10	7 000 000 000
	⑮⑨ 선박표준이익		55	
③ 산출세액 계산	⑬③ 과세표준(⑪②+⑮⑨)		56	7 000 000 000
	⑬④ 세율		11	20
	⑬⑤ 산출세액		12	1 380 000 000
	⑬⑥ 지점유보소득 (「법인세법」 제96조)		13	
	⑬⑦ 세율		14	
	⑬⑧ 산출세액		15	
	⑬⑨ 합계(⑬⑤+⑬⑧)		16	1 380 000 000
④ 납부할 세액 계산	⑭⓪ 산출세액(⑭⓪ = ⑬⑨)			1 380 000 000
	⑭①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17	453 000 000
	⑭② 차감세액		18	927 000 000
	⑭③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19	
	⑭④ 가산세액		20	
	⑭⑤ 가감계(⑭②-⑭③+⑭④)		21	927 000 000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⑭⑥ 중간예납세액	22	
		기한내납부세액 ⑭⑦ 수시부과세액	23	
		기한내납부세액 ⑭⑧ 원천납부세액	24	
		기한내납부세액 ⑭⑨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25	
		기한내납부세액 ⑮⓪ 소계 (⑭⑥+⑭⑦+⑭⑧+⑭⑨)	26	
		⑮①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⑮② 합계(⑮⓪+⑮①)	28	

	⑮③ 감면분추가납부세액		29	12 000 000
	⑮④ 차감납부할세액 (⑭⑤-⑮②+⑮③)		30	939 000 000
⑤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차익	⑮⑤ 등기자산	31	
		⑮⑥ 미등기자산	32	
	⑮⑦ 비과세소득		33	
	⑮⑧ 과세표준 (⑮⑤+⑮⑥-⑮⑦)		34	
	⑮⑨ 세율		35	
	⑯⓪ 산출세액		36	
	⑯① 감면세액		37	
	⑯② 차감세액 (⑯⓪-⑯①)		38	
	⑯③ 공제세액		39	
	⑯④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58	
	⑯⑤ 가산세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40	
	⑯⑥ 가감계(⑯②-⑯③+⑯④+⑯⑤)		41	
	기납부세액	⑯⑦ 수시부과세액	42	
		⑯⑧ ( ) 세액	43	
		⑯⑨ 계 (⑯⑦+⑯⑧)	44	
	⑰⓪ 차감납부할세액(⑯⑥-⑯⑨)		45	
⑥ 미환류소득법인세	⑰①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59	
	⑰② 세율		60	
	⑰③ 산출세액		61	
	⑰④ 가산세액		62	
	⑰⑤ 이자상당액		63	
	⑰⑥ 납부할세액(⑰③+⑰④+⑰⑤)		64	
⑦ 세액계	⑰⑦ 차감납부할세액계 (⑭⑤+⑰⑥+⑰⑥)		46	
	⑰⑧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 세액공제		57	
	⑰⑨ 분납세액계산범위액 (⑮①-⑭⑤-⑮③-⑮⑥-⑮⑧+⑮⑨)		47	
	분납할 세액	⑱⓪ 현금납부	48	
		⑱① 물납	49	
		⑱② 계 (⑱⓪ + ⑱①)	50	
		⑱③ 현금납부	51	
	차감납부세액	⑱④ 물납	52	
		⑱⑤ 계 (⑱③ +⑱④) (⑱⑤=(⑰⑦-⑰⑧-⑱②)	53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2020. 3. 13. 개정)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1. 신고인 인적사항

①소 재 지					
②법 인 명	㈜택스에듀		③대 표 자 성 명		
④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사 업 연 도		⑥전 화 번 호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⑦과 세 표 준		453,000,000
⑧산 출 세 액		90,600,000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⑨가 산 세 액	(, , 2.2/10,000)	
⑩총 부 담 세 액		90,600,000
⑪기 납 부 세 액		2,400,000
⑫차 감 납 부 할 세 액		88,200,000
⑬분 납 할 세 액		0
⑭차 감 납 부 세 액		88,200,000
⑮충 당 후 납 부 세 액		88,200,000
⑯국 세 환 급 금 충 당 신 청	환 급 법 인 세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3월 31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